

- 5 -

# 1. 긴급해양오염영향조사



# 초기대응\_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12.7)



한국배일연구함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초기대응\_**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2014.1.31)



#### Lesson 1. Ephemeral data: Go to the scene ASAP



### 해양환경관리법\_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

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엄영향조사는 오엄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mark>사연</mark> 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해양환경관리법\_긴급해양오염영향조사

[밀표 <u>하</u>	12] 《세상 2013.3.23》 [ <b>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b> (제58조제	네1항 관련)
	종류	배출량
	<ol> <li>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폐님, 카드뮴 및 그 화합 문,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함물</li> </ol>	100kg 이상
폐 기	<ol> <li>시아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낚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 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폐늘류, 트리클로로에널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li> </ol>	10,000kg 이상
말	<ol> <li>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li> </ol>	20,000kg 이상
	4. 농식불성고형불, 문뇨, 오니듀	20,000kg 이상
	5. 그 밖의 폐기물	30.000kg 이상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윤활유)와 폐유	유분총랑이 100kℓ 이상
\$	<ol> <li>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li> </ol>	10,000 ℓ 이상
비 해 액	<ol> <li>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li> <li>으로 정하는 Y류 물질</li> </ol>	25,000 ℓ 이상
체물	<ol> <li>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2류 물질</li> </ol>	25,000 ℓ 이상
질	<ol> <li>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 한 잠정평가물질</li> </ol>	100,000 ℓ 이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법 제77조제1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2할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77조제3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u>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td>

 2013.6.19.>



####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해양환경관리법\_조사기관 및 자격조건



[별표 13]

채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인력		
	대체 가능 인력	
자격 능력	ની ગી અને ગો	전공연구분
	내제 성덕	야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학
질관리기술사 중 1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	환경학
명 이상 보유	력이 있는 자	환경공학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학
연환경분야의 기술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	수산학
시 1명 이상 보유	려이 있는 자	한정학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환경공학
해양·수산양식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	
2) 환경직무분야 중 수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질관리		
3)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해양학
활환경분야의 기사		수산학
2명 이상 보유		환경학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 · 수산양		
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회·경제환경분야		수산학
의 기사 2명 이상		지리학
보유		

이 <sup>한국해당연구한</sup>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긴급대응 인프라\_KIOST 이동실험실



## Lesson 2. Dealing with Mass Media

#### ✓ 사고초기 잘못된 재난보도로 인해 효율적인 사고대응 차질



# 언론 대응\_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_Fact Sheet



이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2. 해양오염영향조사

🔘 <sup>한국예방업구원</sup>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Lesson 3. Oil spill research in a regulatory framework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Farrington described the need and urgency for responsible science in a crisis **mode**: he imparted the need to bring the best science, engineering and research to serve present needs and expand the knowledge base for the future. He cautioned the community to be mindful that research surrounding the spill is being conducted within an environment that is subject to regulatory and legal actions and encouraged scientist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scientific record keeping (i.e. sampling, shipboard notebooks, electronic data, correspondence) as all records can be subpoenaed. He explained that this type of research activity is part of a scientist's public service and academicians should not

avoid this research because of the legal

Consortium for Ocean Leadership SCIENTIFIC SYMPOSIUM MEETING LOUISIANA STATE UNIVERSITY, JUNE 23, 2010

environment.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Lesson 4. Cover multimedia oiling at regionwide scale

육상환경

해양환경

해양의 특성을 고려한 오염 진단 및 평가, 그리고 오염된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복원



- 2. 서식주체: 사람 vs 해양생태계
   3. 이용특성: 사적 vs 공적
   4. 오염특성: 국부적 vs 광범위
   5. 시간규모: 단기적 vs 장기적
- 6. **환경기준:** 사람 보호 vs 생태계 보호

이 유류·유해물질연구단

추진

## Lesson 5. Oil is complex mixture of C<sub>c</sub>H<sub>h</sub>N<sub>n</sub>O<sub>o</sub>S<sub>s</sub>



- 1. 분석항목: 28 PAHs vs Whole PAHs group + Unknowns
- 2. 분석매체: 해수, 퇴적물, 생물 vs 대기포함 다매체환경
- 3. 분석특성: 대표정점 정밀분석 vs 현장 스크리닝+실험실 정밀분석
- 4. 분석주기: 주기적 vs 실시간+주기적 모니터링

#### ▶ 기존 접근법은 생태계 영향을 과소평가, 최근의 연구성과 반영 필요

#### O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해양환경관리법\_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

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엄영향조사는 오엄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mark>사연</mark> 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해양환경관리법\_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항목

[별표 14]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분야	조사항목	비고
	1. 기상	
	2. 해류·조류	
자연환경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1. 연안 및 해역이용	
생활환경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1. 인구	
시 친 . 거 계 친 거	2. 주거	
까꾀 · 경제환경	3. 산업	
	4. 어업현장	

한국해일연구한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해양환경관리법\_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항목\_개정안

분야↓		조사항목↓	비고 🗸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 료유·중유·윤활유) 와 폐유'배출의 경우↓	<ul> <li>□ 해양수질↓</li> <li>- 총유분↓</li> <li>-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알킬PAHs 포함)↓</li> <li>□ 해양퇴적물(조간대 및 조하대)↓</li> <li>- 총유분↓</li> <li>-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알킬PAHs 포함)↓</li> <li>□ 해양생물(이매패류, 어류 등)↓</li> <li>-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알킬화PAHs 포함)↓</li> <li>- 수산물의 안정성↓</li> </ul>	Ļ
해양환경↓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 료유·중유·윤활유) 와 폐유'를 <u>제외한</u> 배출의 경우,1	<ul> <li>□ 배출물의 이동예측↓</li> <li>- 해류, 조류, 모델 등을 이용한 영향범위 설정↓</li> <li>□ 해양수질↓</li> <li>- 배출 대상 물질 및 관련 화합물↓</li> <li>- 일반수질항목↓</li> <li>- 영양염류↓</li> <li>□ 해양퇴적물(조간대 및 조하대)↓</li> <li>- 배출 대상 물질 및 관련 화합물↓</li> <li>- 일반항목: 함수율, 입도, TOC↓</li> <li>□ 해양생물(이매패류, 어류 등)↓</li> <li>- 배출 대상 물질 및 관련 화합물↓</li> <li>- 수사물의 아정성↓</li> </ul>	배출물 영향범위의 육안식별이 어려운 경우 이동예측 수행,1

# 해양환경관리법\_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항목\_개정안

해양생태계	□ <u>표영생태계(플</u> 랑크톤, 무척추생물, 어류 등)↓ □ 저서생태계(조간대 및 조하대)↓	어패류 등 유용수산자원의 경우 (비)계통 조사가 아닌 생태영향조사 실시,
독성영향↓	<ul> <li>□ 서식생물 독성영향↓</li> <li>- 서식처별 생체지표 모니터링↓</li> <li>□ 해양생태계의 영향 파악을 위한 생물 검정</li> <li>시험↓</li> <li>- 해수 생태독성 모니터링↓</li> <li>- 퇴적물 생태독성 모니터링↓</li> </ul>	ل
사회·경제환경.	□ 연안 및 해역이용↓ □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 인구↓ □ 산업↓ □ 어업현장↓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고의 경우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해양수산발전위 원회)에서 결정(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시)↓







#### <sup>1</sup>MLTM, 2008; <sup>2</sup>MLTM, 2011; <sup>3</sup>MLTM,2013; <sup>4</sup>Seo et al., 2014; <sup>5</sup>MLTM, 2009; <sup>6</sup>MLTM, 2010; <sup>7</sup>Jung et al., 2015; <sup>8</sup>Yu et al., 2013; <sup>9</sup>Lee et al., 2016. <sup>10</sup>MLTM, 2012.

- 조하대 부유생물의 경우 1년 후 이전수준으로 회복
- 저서생물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나 4년 경과 후 이전수준으로 회복

🔘 한국예양업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생태계영향평가\_조간대 자연회복평가



## Lesson 6. Environmental Restoration



O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US OPA vs IOPC Fund

#### US Oil Pollution Act of 1990

#### **Primary restoration**

 Any action, including natural recovery, that returns injured resources and services to baseline.

#### **Compensatory restoration**

- Any action taken to compensate for interim losses of natural resources and services that occur from the date of the incident until recovery.
- 1. Natural Recovery Monitoring
- 2. Direct Restoration
- 3. Rehabilitation
- 4. Replacement
- 5. Acquisition of Equivalent Resources
- 6. Combination of the Above

#### **IOPC Fund 92'**

#### **Post-spill Studies**

- To establish the nature and extent of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an oil spill,
- To determine whether or not reinstatement measures are necessary and feasible.

#### **Reasonable Reinstatement Measures**

• Aimed at accelerating natural recovery of environmental damage.

# 잔존유 정화작업



인포그래픽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10년 : 환경영향과 회복		별간불 등록전호 1H152000-000932-01	
Carles KIOST K	Ċ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호 거여하기	10년 :
		회복	
	<b>"</b> "	~~~~	
		T. T.	
			- 2

## 요약 및 결론\_사고의 교훈 및 향후 과제

